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의견서

사 건 2025나386 손해배상(자)

원 고 최 애 숙 외 2

피 고 케이지모빌리티 주식회사(변경 전: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을 제42호증으로 극히 일부만 발췌 제출한 ECU 사양서의 전체 문서 또는 적어도 이 사건 핵심 쟁점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 다 음 -

1.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신청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을 제42호증으로 일부만 발췌 제출한 ECU 사양서의 전체 문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ECU 사양서 중 일부를 임의로 발췌하여 을 제42호증으로 제출하였고, 2026. 4. 28.자 준비서면에서 그 내용을 인용하여 가속페달과 제동페달에서 ECU로 입력되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에 관하여 “이러한 신호에 대해 ECU 내부적으로 복잡한 알고리즘과 로직에 따라 별도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티볼리 G16엔진 ECU 사양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을 제42호증에 대하여는 2026. 4. 30. 변론기일에서 이미 증거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ECU 사양서를 보유하고 있음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이 을 제42호증의 원문서인 ECU 사양서 전체 또는 적어도 이 사건 핵심 쟁점 관련 부분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자, 비로소 을 제42호증을 철회하겠다고 하면서 영업비밀, 기술상 비밀, 컨티넨탈사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등을 이유로 문서 제출을 거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사후적 철회 의사표시는, 피고가 이미 ECU 사양서 일부를 을 제42호증으로 제출하고, 준비서면에서 그 내용을 인용하였으며, 2026. 4. 30. 변론기일에서 증거조사까지 완료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소급하여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ECU 사양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의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을 제42호증은 이미 증거조사가 완료된 서증이므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제출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가 개시되거나 완료된 경우, 그 서증은 더 이상 제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철회에 명시적으로 부동의하는 경우, 증거조사 개시 후 또는 완료 후의 일방적 철회는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 증거조사의 개시가 있기 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증거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다 3013 판결). 이는 적어도 증거조사가 이미 완료되고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부동의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제출자의 일방적 철회가 상대방의 절차상 이익을 침해하는지를 엄격히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제출한 증거를 상대방이 원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이익되는 자료로 채증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증거공통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4. 10. 8. 선고 73다1879 판결).

이 사건에서 을 제42호증은 이미 서증으로 제출되어 2026. 4. 30. 변론기일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된 증거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을 제42호증 철회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부동의하며, 위 서증을 원고들에게 유리한 증거로 명시적으로 원용합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의 을 제42호증 철회신청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피고가 을 제42호증을 철회하겠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이미 소송에서 인용한 ECU 사양서에 대한 문서제출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ECU 사양서는 피고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문서를 가진 사람이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의 ”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란, 당사자가 소송에서 그 문서를 증거로 인용하거나 자기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주장의 근거 또는 보조로 삼은 경우로서, 인용한 당사자가 해당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8. 29.자 2024무677 결정, 대법원 2008. 6. 12.자 2006무82 결정)

이 사건에서 피고는 ECU 사양서의 존재를 추상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는 ECU 사양서 일부를 을 제42호증으로 제출하였고, 준비서면에서 이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더구나 을 제42호증에 대한 증거조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ECU 사양서를 보유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가 요구하는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라는 요건도 충족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사건 ECU 사양서는 피고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피고의 사후적 철회 및 비밀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합니다

피고는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ECU 사양서 일부를 발췌하여 을 제42호증으로 제출하고, 준비서면에서 이를 인용하여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이 ECU 사양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자, 피고는 을 제42호증을 철회하겠다고 하면서 영업비밀 또는 기술상 비밀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유리할 때에는 문서를 서증으로 공개·제출하였다가 불리해지자 같은 문서의 추가 공개·제출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수행은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합니다.

더구나 피고는 제1심에서도 을 제26호증을 제출하였다가 전체 번역문의 제출이 요구되자 을 제26호증의 제출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그 후 항소심에서 다시 을 제26호증을 제출하는 기이한 행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증거를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제출·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요구에 따른 부담, 상대방의 검증 가능성, 그때그때의 유불리에 따라 제출과 철회를 반복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된 을 제42호증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ECU 사양서 중 극히 일부만을 을 제42호증으로 제출하고, 이를 자신의 주장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이 문서제출명령으로 피고의 인용문서인 ECU 사양서의 제출을 구하자, 피고는 다시 을 제42호증을 철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발적인 증거철회가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공개하고, 상대방이 그 전체 문맥 또는 관련 부분의 확인을 요구하면 철회를 통하여 검증을 차단하려는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소송상 패턴의 반복입니다. 피고의 이와 같은 행태는 단순한 신의칙 위반을 넘어 조직적·반복적 진실 은폐 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귀원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시어 ECU 사양서 전체 또는 적어도 이 사건 핵심 쟁점 관련 부분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발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ECU 사양서 중 이 사건 핵심 쟁점 관련 부분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들은 ECU 사양서의 기재 내용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므로 ECU 사양서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첫째, 가속페달과 제동페달의 각 입력신호에 대해 ECU 내부적으로 어떠한 알고리즘과 로직에 따라 처리하는지가 ECU 사양서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즉, ECU가 가속명령과 제동명령을 어떠한 판단 절차를 거쳐 내리게 되는지, 그리고 그 판단 절차에서 소프트웨어 결함 발생 가능성을 피고가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가 밝혀져야 합니다.

특히, 가속명령은 운전자의 페달 입력값, 센서 신호, 차량 상태값, 제동 관련 신호, 오류검출 조건, 우선순위 판단, fail-safe 로직, 진단로직 및 예외 조건 등이 결합되어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ECU 사양서에서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ECU가 BCM에 어떠한 명령을 내리고, ECU와 BCM 사이에 어떠한 메시지를 서로 교환하는지가 문제됩니다. ECU와 BCM 사이의 명령, 메시지 ID, 신호명, 데이터 길이, 전송주기, 조건값, 오류 발생 시 처리방식 등은 사고원인 및 당사자들의 각 주장의 진위 판단에 필수적이며 이들은 ECU 사양서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셋째, ECU가 EDR에 CAN 통신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공급하는지가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EDR 기록의 의미와 신뢰성은 ECU가 어떤 데이터를 어떤 조건과 기준으로 EDR에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ECU 사양서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넷째, ECU에 내장된 BOS 기능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BOS 기능이 어떠한 조건에서 작동하는지, 어떠한 입력값을 기준으로 개입하는지, 가속명령을 차단·제한·무시하는지, 예외 조건이나 비작동 조건이 있는지는 이 사건 쟁점 판단에 필수적이며 이들은 ECU 사양서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결국 ECU 사양서 중 위 4가지 사항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사고원인과 당사자들의 각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증거이므로 문서제출명령이 내려져야 합니다.

6. 을 제42호증은 ECU 사양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이 사건 핵심 쟁점들을 밝힐 수 없습니다

피고가 을 제42호증으로 제출한 것은 ECU 사양서 중 극히 일부로서 가속 페달과 제동페달에서 ECU로 입력되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에만 국한된 것입니다. 따라서 을 제42호증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으로 되어 있는 위 5.항 기재 4가지 사항에 관하여 아무것도 밝힐 수 없습니다.

위 3.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가 보유를 인정하고, 일부를 제출·인용하였으며, 증거조사까지 완료된 을 제42호증의 원문서, 즉 ECU 사양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귀원께서 ECU 사양서 전체에 대한 제출명령을 곧바로 발령하는 데 신중을 기하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항에 따라 ECU 사양서 중 위 4가지 핵심 사항, 즉 ECU의 가속명령 판단 절차 및 소프트웨어 결함 대비책, ECU와 BCM 사이의 명령 및 메시지 교환, ECU가 EDR에 CAN 통신으로 공급하는 데이터, ECU에 내장된 BOS 기능의 내용이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문서제출명령이 발령되어야 합니다.

7. 10여 년이 경과한 구세대 ECU 사양서는 더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추정되므로 이에 대한 영업비밀 주장에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피고가 ECU 사양서에 영업비밀 또는 기술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추상적·포괄적 주장만으로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15조 제1항 제2호의 ”직업의 비밀”에 관하여, 그 사항이 공개되면 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이후 직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말하며, 그러한 정보라도 보호가치 있는 비밀인 경우에만 문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보호가치 있는 비밀인지 여부는 정보의 내용과 성격, 공개로 인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사건의 내용과 성격, 문서를 증거로 필요로 하는 정도, 대체 증거의 존부 등을 종합하여, 비밀 공개의 불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재판 공정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2. 21. 자 2015마4174 결정; 대법원 2016. 7. 1.자 2014마2239 결정).

이 사건 차량은 최초등록일이 2017. 11. 5.인 2018년식 차량입니다. ECU 사양서는 차량 양산 전에 설계·개발이 완료되었을 것이므로, 그 완성 시점은 2015년 내지 2016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피고가 인용한 ECU

사양서는 항소심 변론기일 시점인 2026. 7.경 기준으로 약 10여 년이 경과한 구세대 ECU 소프트웨어 사양서입니다.

자동차 ECU 소프트웨어는 차종, 연식, 규제, 전장 아키텍처, 센서 구성, 통신 프로토콜, 제어 알고리즘 및 보안 요구사항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대체됩니다. 그러므로 2015년 내지 2016년경 개발된 ECU 사양서가 2026년 현재까지 더이상 동일한 형태로 후속 모델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추정됩니다.

이 사건 ECU 사양서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현재는 새로운 버전의 ECU 사양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대법원 판결들에 따라 이 사건 구형 ECU 사양서는 현재 시점에서 민사소송법 제315조 제1항 제2호가 예정하는 보호가치 있는 기술 또는 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8. 컨티넨탈사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주장은 피고 자신의 공개행위와 배치됩니다

피고는 ECU 사양서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의무를 컨티넨탈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으므로 ECU 사양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을 제12호증으로 ECU 사양서의 일부를 이 사건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하였고, 그로써 ECU 사양서 일부를 원고들 및 법원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을 제42호증으로도 ECU 사양서 일부를 발췌 제출하고, 이를 준비서면에서 인용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대로 컨티넨탈사와의 약정상 ECU 사양서의 제3자 공개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면, 피고가 을 제12호증 또는 을 제42호증으로 ECU 사양서 일부를 자발적으로 제출한 행위 자체가 그 약정에 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피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범위에서는 ECU 사양서를 공개하면서, 원고들이 전체 문맥 확인 또는 핵심 쟁점 관련 부분의 확인을 요구하자 비로소 컨티넨탈사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내세우는 것은 자기모순입니다.

더구나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제출은 임의적·사적 공개와 다릅니다. 이는 법령에 근거한 재판절차상 제출입니다. 통상적인 기술자료 제공계약 또는 비밀유지약정에는 법령상 요구, 감독기관의 요구, 법원의 명령 또는 재판절차상 필요에 따른 제출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조항이 두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고가 이와 달리 주장하려면, 컨티넨탈사와의 비밀유지약정 원문을 제출하여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제출까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소명 없이 컨티넨탈사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9. 타 사건 증언녹취서 제출을 이유로 ECU 사양서의 외부 공개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피고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타 사건에서 국과수 직원 김종혁의 증언녹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을 들어, 원고들 또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ECU 사양서를 외부로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언녹취서는 공개된 법정에서 증인이 진술한 내용을 기록한 소송 자료입니다. 반면 ECU 사양서는 피고가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내부 기술문서입니다. 양자는 비밀성, 정보의 성격, 공개 경위, 소송상 제출 목적, 외부 공개 위험성 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또한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문서송부촉탁절차를 통하여 증언녹취서를 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 법정에서 현출된 진술을 기록한 증언녹취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원고들 또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ECU 사양서를 외부로 공개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성격의 자료를 동일 시하는 논리적 비약입니다.

원고들 및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ECU 사양서를 이 사건 소송수행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것이며, 귀원께서 정하시는 비밀유지 조건, 열람 제한, 목적 외 사용 금지, 사본 관리 조건을 준수할 의사가 있습니다.

10. 비밀보호 필요성은 제출거부가 아니라 제출·열람 방법 조정을 통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침해소송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침해소송에서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가 소송절차에서 필요할 경우, 법원이 그 영업비밀을 소송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유지명령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 사건에서도 변형된 형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의 비밀보호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 (1) 피고로 하여금 ECU 사양서의 상세한 목차 전체를 먼저 위원에 비공개로 제시하도록 명하는 방법
- (2) 위원이 이와 같은 목차를 검토한 뒤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되는 부분만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
- (3)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는 방법
- (4) 사본 작성, 보관, 반출, 전자파일 저장, 재복제, 반환·폐기 방식을 제한하는 방법
- (5) 필요한 경우 일부 기술정보를 가림 처리하는 방법
- (6) 원고들 및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비밀유지확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

원고들 및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원이 비밀유지명령 또는 그에 준하는 비밀보호조치를 명하실 경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위반 시 제재를 감수하는 서약서를 작성할 의사가 있습니다.

11.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재판 공정의 이익이 피고의 추상적 비밀보호 주장보다 우월합니다

대법원은 직업상 비밀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정보의 내용과 성격, 공개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사건의 내용과 성격, 문서를 증거로 필요로 하는 정도, 대체 증거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하여, 비밀 공개의 불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재판 공정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2. 21.자 2015마4174 결정; 대법원 2016. 7. 1.자 2014마2239 결정).

이 사건에서 ECU 사양서 중 위 5.항 기재 4가지 핵심 쟁점 관련 부분은, 이 사건 자동차의 ECU가 어떠한 판단 절차를 거쳐 가속명령을 내리고, BCM과 어떤 명령·메시지를 교환하며, EDR에 어떤 CAN 데이터를 공급하고, BOS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입니다.

원고들이 이 문서에서 4가지 핵심쟁점들을 확인하지 못하면, 피고가 선택적으로 발췌한 을 제42호증, 즉 가속페달과 제동페달에서 ECU로 입력되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에 관한 극히 일부 기재만을 기준으로 피고 주장을 다투어야 하는 현저히 불공평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제1심의 사실오인을 바로잡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심리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듭니다.

반면 피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상 불이익은 추상적입니다. 자동차업계의 통상적 업무관례상 10여 년이 지난 이 사건 ECU 사양서가 현재 후속 모델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추정됩니다. 더구나 피고는 이 사건 ECU 사양서의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이미 을 제42호증으로 이 사건에서 공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재판 공정의 이익이 피고의 추상적 비밀보호 주장보다 명백히 우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12. 결론

피고는 이 사건 ECU 사양서의 일부를 을 제42호증으로 제출하고, 준비서면에서 그 내용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였으며, 위 을 제42호증에 대하여는 2026. 4. 30. 변론기일에서 이미 증거조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을 제42호증 철회에 명시적으로 부동의하고, 위 을 제42호증을 원고들에게 유리한 증거로 명시적으로 원용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을 제42호증 철회신청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ECU 사양서를 보유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ECU 사양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의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의 문서제출명령신청 이후 을 제42호증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발생한 인용문서 해당성과 문서제출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자신에게 유리할 때에는 ECU 사양서 일부를 발췌·제출하고, 불리해지자 철회 및 영업비밀 주장을 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합니다.

무엇보다 피고가 을 제42호증으로 제출한 것은 ECU 사양서 중 극히 일부, 즉 가속페달과 제동페달에서 ECU로 입력되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에 관한 발췌본에 불과합니다. 이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① 가속페달과 제동페달의 각 입력신호에 대해 ECU 내부

적으로 어떠한 알고리즘과 로직에 따라 처리하는지와 ECU가 가속명령을 어떠한 판단 절차를 거쳐 내리게 되는지 및 그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결함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② ECU가 BCM에 어떠한 명령을 내리고 어떠한 메시지를 서로 교환하는지, ③ ECU가 EDR에 CAN 통신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공급하는지, ④ ECU에 내장된 BOS 기능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전혀 밝힐 수 없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위원께서 원고들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채택하시어,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 주실 것을 구합니다.

피고가 을 제42호증으로 일부 발췌 제출한 ECU 사양서의 전체 문서

다만 위원께서 ECU 사양서 전체에 대한 제출명령을 발령하는 데 신중을 기하신다면, 우선 1차적으로 위 ECU 사양서 중 다음 4가지 핵심 사항에 관한 설명이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는 문서제출명령을 발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목차(ECU 사양서를 구성하는 항목들로 그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시하는 제목과 해당 페이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ECU 사양서의 본문, 장·절·항목, 표, 도면, 흐름도, 신호정의표, 메시지 테이블, 진단항목, 부속서, 별첨자료 및 관련 전자파일의 구성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표현, 표시, 색인, 목록 등 일체를 말합니다).
- (2) ECU가 가속페달과 제동페달의 각 입력신호에 대해 ECU 내부적으로 어떠한 알고리즘과 로직에 따라 처리하는지와 가속명령을 어떠한 판단 절차를 거쳐 내리는지, 그리고 그 판단 절차에서 소프트웨어 결함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관한 부분
- (3) ECU가 BCM에 어떠한 명령을 내리고, ECU와 BCM 사이에 어떠한 메시지를 서로 교환하는지에 관한 부분
- (4) ECU가 EDR에 CAN 통신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공급하는지에 관한 부분
- (5) ECU에 내장된 BOS 기능의 내용, 작동조건, 제한조건, 예외 조건 및 제어내용에 관한 부분

2026. 5. .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 중 선

서울고등법원(춘천) 제2민사부 귀중